

조선조 문묘 배향 가문의 승계*

-승계 원리와 혈연거리를 중심으로-

Continuation of lineage of the confucian royal families(文廟配享宗家) in Chosun dynasty*

- Focusing on the continuation principles and distance of lineage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 Yi, Soon-Hyung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연구 가계의 세보 |
| II. 조선조 사대부 가문의 승계 원리의 형성 | 분석 결과 및 해석 |
| III. 연구대상 | V. 결 론 |
|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written lineages of 14 confucian royal famili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distance of family relationship to reveal some characteristics of the continuation principles in Chosun dynasty. The result shows that they used the rule of adopting the son of legitimate wife as the head of the family, who had the same surname and also ability enough to lead their clan. This rule has been observed for five hundred years over some socio-political differences of respective periods.

I. 문제 제기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승계 원리가 존재했다.

고려조 사회에서 가계는 혈연과 장자 우선 원리에 의해 승계되었다. 조선조 사회에서 사대부가의 가계는 적통주의 이념에 입각해 승계하는 원칙을 세웠

* 이 논문은 이순형 「한국의 명문 종가」, (서울 : 서울대출판부, 인쇄중)의 일부임

다. 조선 초기 태종은 왕자의 난의 명분을 적통에 두었으며 이후 승계의 원리를 적통에 두었다. 서손들에게는 일체의 직위를 주지 말라는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¹⁾의 상소 이후 승계의 적통 원칙은 확고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허나 고려로부터 이어온 혈연 중심의 승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고려조 사회에서 적통이라는 명분과 혈연 원리에 입각해 승계되던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부터 제시된 적통은 적자 중심의 가계 계승을 의미하는데 적통의 설정은 적자 중심, 장자 우선의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었다. 그렇지만 장자가 적손이 없이 서손만 있는 경우에 적자인 동생에게 가계가 승계될 것인지, 서손에게 승계될 것인지의 의문이다. 동생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손에게 승계하거나 양자를 들여 적자에게 승계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전자는 혈연을 강조했고 후자는 적통의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조선사회에서 승계원리인 적통주의(嫡統主義)에 입각한 승계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가(宗家)의 승계는 적통을 증시한 종자 승계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다. 가능하면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조선시대를 거쳐 온 종가의 족보를 분석하여 적손 우선 원칙과 장자 우선 승계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통해서 종가의 가계 계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제도의 경직성을 깬 예외적 사례가 있었는지를 통해서 조선 승계 제도의 융통성 정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서손(庶孫)과 형제(兄弟)가 있을 때 서손으로 승계했는지, 형제 승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양자로 승계했는지를 조사한다. 혈친 승계의 원칙에서 서손을 승계했을 것이며, 적통의 명분 원칙에서라면 형제를 승계하거나 양자를 들었을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처럼 적통론이 강화되면서 형제승계가 양자 승계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초기에는 형제 승계를 허용하다가 적통론이 강화되면서 양자 승계로 바뀌었을 것이다.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승계했다는 원리가 제시되고 조선 초기에 실시되었다는 것(이광규, 1977) 이 이를 시사한다.

둘째 목적은 양자를 들었다면 혈연 거리가 가까운 대상을 골랐는지 아니면 먼 거리의 대상을 선정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Peterson은 1618, 1733, 1806, 1863년의 4개년의 계후등록을 분석하여 입양친족 범위가 초기에는 절반 정도가 형제간에 입양하던 것이 후기로 내려올수록 6%정도로 감소하며, 입양친족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광규(1977)도 1918년부터 1863년 사이에 계후등록 4권을 분석하여 100여 년간의 생부와 양부간의 혈친거리를 살펴보았다. 이광규는 생부와 양부는 17세기 초기일수록 근친자이며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 내려올수록 원친자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재석(1983)도 이에 동의했다. 이 현상이 정부에서 인정하던 제도와 관련될 것이라는 언급이 외에 설득력 있는 요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혈연의식과 가문의 번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종가인들이 혈연의식에 집착했다면 가까운 혈연거리, 즉 숙질 양자가 일반화되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다른 조건을 중시했다면 원거리 혈손 양자거나 전혀 혈손이 아닌 동성지친을 양자로 들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밝혀보기 위해서는 양자가 중시조(中始祖)의 후손 중에서 어떤 혈연거리에서 들어왔을 것인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II. 사대부가의 입양 승계자의 특성

혈자(血子)가 아닌 타인을 받아들여 양육한 것을 입양(入養)이라고 정의했을 때 입양된 아들을 양자(養子)라고 정의한다. 양자는 수양자(收養子), 시양자(侍養子), 계후자(繼後子) 등 여러 종류의 명칭으로 불리었다. 제사 계승을 위한 양자를 위인후자(爲人後子), 계후자(繼後子)라고 하는데(박병호, 1973), 고려시대 문헌에는 계후자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동일 가문의 아들(同宗子)이나, 유기아(遺棄兒)를 포함한 이성지자(異姓之子)를 모두 수양자

1) 태종 15년(1415년)

(收養子)라고 불렀다(고려사, 85권, 志 39, 刑法 2 奴婢條). 조선조에는 수양자는 양자를 수양(收養), 수이양(收而養), 수이양육(收而養育) 즉 '거두어 기른다'를 강조한 호칭이고 계후자는 '대를 잇는다'를 강조한 호칭으로서 각각 동일 현상에 대한 다른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수양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주해(註解)에서 형전(刑典)의 사천조(私賤條)에 나오는데 타인의 자로서 3세전에 수양된 자를 칭하며 친생자(親生子)와 같은 지위를 인정했다. 이 항목에는 성이 같은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았다.²⁾ 성이 다르더라도 3세 이전에 입양해서 기른 아이를 수양자로 삼았다는 것만이 명시되어 있다.

수양자나 시양자는 이성친(異姓親)과 타인의 아들도 다수 포함되고 있다. 조선조의 양자관계 문헌인 수양시양등록(收養侍養謄錄)은 17세기말엽부터 18세기말까지 89년간의 입양기록이다. 수양시양등록에 제시된 124건의 입양자료는 양친과 양자의 친족관계 유무를 10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박병호, 1973) 그중 버려진 아기를 입양한 경우(39사례), 아는 사람의 아들을 입양한 경우(8사례), 자신의 노비를 입양한 경우(2사례), 타인의 노비를 입양한 경우(1사례), 자기 여종의 아들을 입양한 경우(6사례), 외손 자녀 및 생질을 입양한 경우(28사례), 처가 친족을 입양한 경우(25사례), 이성(異姓) 질손(姪孫)을 입양한 경우(13사례), 수양제(收養弟)의 아들을 입양한 경우(1사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입양은 신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반가에 이성수양(異姓收養)의 금제(禁制) 원칙(김두현, 1968)이 존재했다. 계후자는 양반신분의 입후 봉사를 위한 것이고, 수양자나 시양자는 중인, 내지 양인의 양자를 의미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조선조의 양자관계 문헌인 후계등록(後繼謄錄)에는 입양결정합의자를 모두 명기한 데 대해서 수양시양등록(收養侍養謄錄)은 입양 합의한 것을 제시했다. 특히 후계등록에 입양신청자는 물론이고 입양결정합의자도 모두 성명(姓名)과 직역(職役)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데 비해서 수양시양등록에는 양가(兩家) 상의(相議), 문중(門中) 상의, 문족(門族) 상의, 문장(門長) 상담 등 모호하게 기록했다(최재석, 1983).

수양자와 시양자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 그 공통점은 수양부(收養父)와 시양부(侍養父)가 무후(無後)한 경우에 입양을 한 것이나 수양여(收養女)와 시양여(侍養女) 수가 적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시양자보다는 수양자가 무척 많다는 점, 수양자는 동성친(同姓親)이 많은데 비해 시양자는 이성친(異姓親)이 많다는 점, 수양자는 모두 3세 이전에 입양한 데 비해서 수양자는 3세 이후도 입양되었다는 점, 수양자는 소목(昭穆)이 틀리는 입양자(즉, 孫行列의 양자)가 많다는 점이다(최재석, 1983). 이에 따르면 양반 중에도 사대부 가문의 양자는 양부가 무후한 상황에서 입양한 계후자일 것이라는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입양자는 혈친자(血親子) 내지는 동종친(同宗親)으로 이성친(異姓親)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적자 없이 서자가 있을 경우에 양자 승계와 서자 승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실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광규(1977), 최재석(1983) 등은 후계등록(後繼謄錄)을 통해서 생부와 양부의 관계를 밝힌 결과에 의하면 77개 사례 중에서 34개의 경우가 동생(同生)이고 4촌이 17 경우, 6촌이 13 경우, 8촌이 8 경우, 10촌이 3 경우, 12촌이 1, 14촌이 1 경우이다. 이 표를 가지고 최재석이 17세기 중기까지는 형제, 4촌의 근친자에서 입양했으나 18세기로 내려올수록 원친자에서 입양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다(최재석, 1983, 625)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선 명문 사대부가의 가문에서 승계원리를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조선 사대부가의 승계는 이성승계보다는 동성승계일 것인가? 즉 승계자는 혈친자(血親子) 내지는 동종친(同宗親)인가?
- 연구문제 2. 조선 사대부가의 승계는 적손과 서손이 있을 때에는 적손 우선 원칙이 실시되었는가?
- 연구문제 3. 조선 사대부가의 승계원리는 형제승계원리, 장자승계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2) 取他人子 養以爲子 曰 侍養 三歲前收而養之 卽同己子 曰收養

연구문제 4. 적손이 없이 서손만 있을 경우에는 서손 승적(承嫡) 승계와 입양자 승계 중 어느 승계 원칙이 실시되었는가?

연구문제 5. 동종입양자의 친족거리(親族距離)가 어떠한가? 시기에 따라서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확대되었는가?

III. 연구대상

조선조에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14 인물의 가문을 대상으로 그들의 족보 가운데 서손(庶孫)의 기록이 정확한 청보(淸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덕수 이씨 울곡(栗谷) 이이(李珥) 종가, 은진 송씨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과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종가, 광산 김씨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종가, 창령 성씨 우계(牛溪) 성혼(成渾) 종가, 배천 조씨 중봉(重峯) 조헌(趙憲) 종가, 하동 정씨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종가, 울산 김씨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종가, 서흥 김씨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종가, 한양 조씨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종가, 진성 이씨 퇴계(退溪) 이황(李滉) 종가, 여강 이씨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과 반남 박씨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 종가이다.

이들 종가의 역사는 고려말부터 조선을 거쳐 일제시대까지 대략 25-27대를 전후한 것으로 대략 1세를 20년으로 계산해도 500년 너머 긴 시간이 해당된다. 이 시기 가운데 문묘 배향된 인물을 기점으로 대략 13-15세 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300년이 분석 대상이 된다. 이 시기 동안의 족보를 통해 가문의 승계를 통시대적으로 분석했다. 이 가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우선 이들 가문에는 문묘 배향된 성현(聖賢)의 제사와 정신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승계자에 대한 개념이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 왔으므로 정확하게 조선의 승계 원칙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이다. 또한 문묘 배향된 유현(儒賢)의 봉사손(奉祀孫)에게 종9품 정도의 음직(蔭職)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봉

사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조정에서 관심을 두었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승계 원칙이 더 철저히 유지되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 가문의 족보는 종가에 문의하여 청보(淸譜)를 규장각에서 구했으며, 규장각에 없는 족보는 종가나 문중에 가서 찾아 구했다. 대부분 옛 가계 승계는 일제시대 이전의 족보였다. 분석의 기준이 된 것은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이다. 이 족보는 일제시대(1931년)에 조선의 명문 가계의 세보만을 모아 발행한 것이다. 조선의 유명 성씨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하여 만든 족보이므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 『만성대동보』에 나와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아래 성씨별 족보를 구해 비교해 보았다.

덕수이씨(德水李氏) 이이(李珥) 종가의 족보는 숙종 38년(1712년)에 발행한 덕수이씨세보(德水李氏世譜)인데 이는 수곡(睡谷) 이여(李奮)가 중심이 되어 발간한 것이다. 은진송씨(恩津宋氏)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의 종가의 족보는 고종24년(1887년)에 입재(立齋) 송근수(宋近洙)가 만든 정해대보(丁亥大譜)이다. 광산김씨(光山金氏) 김장생(金長生)의 종가의 가계는 영조24년(1747년)에 지추공 김진동(金鎭東)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허주공파세보(虛舟公派世譜)이다. 창령성씨(昌寧成氏) 성혼(成渾) 종가의 족보는 숙종35년(1709년)에 성환(成煥)이 발행한 창령성씨족보(昌寧成氏族譜)이다. 배천조씨(百川趙氏) 조헌(趙憲)의 족보는 을사보(己卯譜)로서 영조35년(1759년)에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울산김씨(蔚山金氏) 하서 김인후(金麟厚)의 족보는 을사보(乙巳譜)이다. 하동정씨(河東鄭氏) 정여창(鄭汝昌)의 족보는 정환주(鄭煥周)가 광무 원년(1897년)에 발간한 족보이다. 서흥김씨 김굉필(金宏弼)의 족보는 영조7년(1731년)에 발간된 서흥김씨보첩(瑞興金氏譜帖)이다. 한양조씨(漢陽趙氏) 조광조(趙光祖) 종가는 조원기가 만든 갑신단권보(甲申單券譜)를 가지고 분석했다. 진보이씨(眞寶李氏) 이황(李滉)의 종가는 이윤무(李允茂)가 영조23년(1747년)에 발간한 진성이씨족보(眞寶李氏族譜)와 종가에 전해오는 상계가록(上溪家錄)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여강이씨(驪江李氏) 이언적(李彦迪)은 인조 19년(1642

년)에 발간된 신사보(辛巳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 족보는 회재의 고손자 이채(李埰)가 만든 것이다. 반남박씨(潘南朴氏) 박세채(朴世采)의 종가는 나주박씨세보(羅州朴氏世譜)를 가지고 분석했으며 이 족보는 인조 20년(1642년)에 선조의 부마인 박미(朴湍)가 만든 것이다. 각 종가별 조선시대의 가계는 위 정보를 통해서, 현대 종손의 가계는 일제시대 이후 발간한 족보를 보았으며 족보에 밝혀진 사실을 종가에 방문해서 면접을 통해 확인했다.

IV. 연구 가계의 세보 분석 결과 및 해석

1. 승계원리 고찰

조선조에 문묘 종사한 유현 14명의 12개 성씨의 종가 계보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모두 동종승계(同宗承繼)에 해당되었고 이성승계(異姓承繼)는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모두 혈친자이고 한 경우 우암 송시열 가계는 우암이 무자하여 당질을 입양했으므로 혈친자가 아닌 동종(同宗) 승계이다. 12가계에서 이성수양(異姓收養)의 금제(禁制) 원칙(김두현, 1968)이 철저히 지켜진 것이다. 모두 시조의 혈손 중에서 양자를 들었다. 한 조상의 후손들 사이에서만 봉사손이 이어진 것이다.

다음 연구문제 2는 사대부가의 승계 원리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적통론에 의해 서손보다는 적손이 승계하고 적손 중에는 장손이 우선 승계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종가 14가문의 자료에서 적, 서손이 있을 때에는 적손(嫡孫) 우선 원칙과 적손 중에서는 장손(長孫) 우선의 원칙(嫡長先位)이 지켜져 왔다. 적손과 서손 가운데 적손이 승계하고 적손 중에서는 장자가 승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손 장자가 최우선 승계권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문제 3은 적자(嫡子)가 없고 서자(庶子)가 있을 때 서자로 승계하는지 아니면 적제(嫡弟)로 승계하는가였다. 이 문제는 조선 실록에서도 여러 차례 논쟁 거리가 되어 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왕명(王命)이외에 서자가 승계한 적이 없다. 유현

종가의 자료에는 몇 차례 적제에게 승계된 경우가 있다. 적자가 없어 임금이 유현을 제사를 모시도록 서자를 봉사손으로 정한 경우이다. 사계 김장생의 차자 김집은 형이 일찍 죽자 자신에게 서손만 있고 적손이 없다는 이유로 삼자인 김반(金槃)에게 승계하도록 한 바가 전형적 사례이다. 사계의 가계는 셋째 아들 반과 그의 아들 익열(益烈)로 이어졌다.

일두 정여창 종가의 9세 희직(希稷)이 적자가 없다는 이유로 서자 여산(如山)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동생 희설(希畵)에게 승계했던 것도 동일한 사례이다. 희직은 적손이 없고 서자 여산(如山)이 있었다. 희직은 죽음에 임박해 사세대종(四世大宗)을 서손에게 맡길 수 없어 동생 정랑공 희설(希畵)에게 맡긴다고 유언했다.³⁾ 희설도 무자하여 당질 언남(彦男)을 양자로 들여 승계했다. 위 두 경우는 가문에 전해오는 경우인데 사계 가계에는 동생이 승계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두 가계에는 희직 아래에 당질 양자로 언남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생의 양자가 승계자가 된 것이다. 이는 차양자(次養子)의 경우로 일단 동생을 양자로 들여 일시 봉사손을 삼는다. 그에게 아들이 생겨 일정 연령이 되면 동생자(同生子)에게 제사와 유산을 정식으로 상속하고 동생은 파계 복귀하여 별종(別宗)을 이루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두 종가는 동생에게 승계했으나 동생의 아들이 정식으로 양자가 되고 동생은 복귀된 예이다.

이 현상은 다음 사실을 시사한다. 조선조에도 고려조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제승계가 있었지만 이는 조선 초기와 중기에 국한되었던 것 같다. 17세기 이후 재가 금지와 더불어 적손 승계가 강화되면서(최재석, 1983) 무자한 경우에 서손 승계를 하지 않았으며, 형제승계를 실시하기보다는 양자승계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연구문제 4는 서손만 있는 경우에 서손으로 승계했는지 아니면 입양자로 승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경우는 조선 중기와 후기에 따라 다르다. 종통론이 17세기경 강화되면서 사대부가에서는 서

3) 嫡無嗣只有庶子如山四世大宗不可以傳子庶子臨終托從祀於弟正郎公

자가 있어도 대부분 입양자로 승계했다. 단지 조선 조 중기, 즉 16세기경에 중시조들의 경우에만 예외가 있었다. 즉 문묘에 배향된 율곡 이이와 회재 이언적의 경우가 그러했다. 율곡 이이는 적자가 없이 서자만 2명을 두었다. 율곡의 부인 곡산노씨가 임진난에 자결하여 그 후사를 정하지 못했다. 후에 임금이 서손 중에 장자 경임(景臨)을 봉사손으로 승중하여 봉사손으로 정했다.

2. 입양자의 특성과 혈친거리

연구문제 5는 입양자의 혈친거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입양자의 구체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덕수 이씨 율곡 종가

율곡 이이 종가는 16세, 17세와 25세에 3회에 걸쳐 양자를 들였다. 13세 이(珙)의 아들 경임(景臨)은 네 아들, 제(稜), 거(稭), 추(秋)와 니(翺)를 두었다. 제는 아들이 없어 동생 거의 아들 후시(厚蒔)를 양자로 들였다. 3촌 양자이다. 17세 후시도 무후하여 추의 아들 후수(厚樹)의 아들 연(緜)을 양자로 들였다. 당질 양자이다. 24세 한영(漢永)은 무후하여 동생 태영(台永)의 아들 종문(種文)을 입양해 봉사손을 이었다. 율곡 종가에는 삼촌 숙질 관계에서 2회, 오촌 당질 관계에서 1회 양자가 들어왔으므로, 율곡 종가는 비교적 가까운 혈친⁴⁾을 양자로 들였다.

2) 은진 송씨 가계

(1) 은진 송씨 우암 종가

귀수(龜壽)의 아들 응기(應期)는 조(祚)자 항렬의 아들 6명을 둔다. 흠조(欽祚), 승조(承祚), 천조(天祚), 방조(邦祚), 갑조(甲祚)와 희조(熙祚)이다. 그중에 다섯째 아들 갑조의 아들 5명 중에 셋째가 우암 시열(時烈)이다. 시열은 아들이 없어서 사촌인 시형(時瑩)의 둘째 아들 기태(基泰)를 입양한다. 말하자면 당숙질(5촌) 양자다.

우암의 양자 기태는 아들 5형제를 두었다. 기태의 만자 은석(殷錫)은 일원(一源), 한원(漢源), 혼원(混

源), 호원(浩源)과 회원(會源)을 두었다. 기태의 만손자 일원은 3형제를 두었는데 만자인 문상(文相)은 환세(煥世)를 두고 환세는 택규(宅圭), 덕규(德圭)와 익규(益圭)를 두었는데 익규는 출계했다. 택규는 흠서(欽書), 흠시(欽詩), 흠례(欽禮), 흠악(欽樂)의 네 아들을 두었다. 택규의 네 아들 중 맏이인 흠서를 제외한 흠시와 흠예는 출양(出養)했다. 그런데 종자(宗子)인 흠서가 무후하여, 양자로 간 흠시의 둘째 아들인 종수(宗洙)를 양자로 들여 종자(宗子)로 삼았다. 이 경우는 백부 앞으로 간 양자(三寸)였다. 다시 종수가 무후하여 병일(秉一)을 입양하니 한원(漢源) 5대 손인 관수(觀洙)의 둘째 아들이다. 이는 한원에게 5대손인 관수의 둘째 아들이니 13촌 사이이다. 그리고 병일이 무후하여, 혼원(混源)의 6대 손인 병문(秉文)의 셋째 아들 세헌(世憲)을 양자로 들였다. 병일과 세헌은 15촌 사이이다.⁵⁾ 그 후에도 세헌이 무후하여 흠원(欽源)의 8대 손인 재경(在慶)을 양자로 들이니, 우암의 셋째 손자계로 19촌 숙질간이다. 그후 계가 끊겨 철호(哲鎬)를 입적하였으니, 이 이가 우암의 만손자 은석(殷錫)의 차자 한원(漢源)의 9대 손이다. 철호도 무후하여 현재 종손인 영달(永達)은 양증조(養曾祖)인 세헌의 생가(生家)에서 환기(煥箕)의 8대 손으로 종가에 입양되었다.

(2) 은진 송씨 동춘당 종가

동춘당 세보에서 보듯이 8세인 요년(堯年)부터 동춘당 송준길까지는 모두 혈손(血孫)으로 이어졌

4) 景臨-稜-^平厚蒔-^平緜

- 稭-厚蒔^出

- 秋-厚蒔-緜^出

- 縉

- 縉

- 縉

5) 殷錫--源-文相-煥世-宅圭-欽書-宗洙-^平秉--^平世憲

- 漢源-應相-煥星--圭-欽中-觀洙-秉九

- 秉一^出

- 秉三

- 混源-寅相-煥箕-信圭-欽天-緜洙-秉文-世憲^出

다. 요년은 여해(汝諧)와 여집(汝緝)을 두었다. 만자인 여해는 아들이 없었고 둘째인 여집은 아들 세영(世英)을 두었다. 세영은 응서(應瑞)를 두고 응서는 이창(爾昌)을 두었으며 이창은 준길(浚吉)을 낳았다. 동춘당 후에도 준길은 아들 광식(光植)을 두었고 광식은 병문(炳文), 병하(炳夏), 병원(炳遠)과 병익(炳翼)의 네 아들을 두었다. 병문은 우봉 이씨와 혼인하였으나 무자하여 동생인 병하의 두 아들 중에 맏자인 요경(堯敬)을 양자로 들였다. 즉 요경은 백부에게 양자(3촌)로 입적된 것이다. 병하는 요경(堯卿)을 비롯해 무자인 형제들에게 아들을 양자로 주었다.

요경은 아들 태현(台鉉)을 두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 복흙(復欽)을 양자로 들였다. 요경은 숙부 병익의 아들인 요보(堯輔)의 두 아들 진흙(晉欽)과 복흙(復欽) 가운데 둘째 아들 복흙을 양자로 맞았다. 5촌 당질 양자이다. 그런데 태현이 무자하여 진흙의 두 아들 지연(志淵)과 부연(溥淵) 가운데 둘째인 부연을 양자로 맞았다. 즉 7촌 조카 양자를 한 것이다.

부연은 계동(啓東)을 낳았으나 계동이 무자하여 9촌 조카인 경희(敬熙)를 양자로 들였다. 즉 계동은 증조부의 동생인 요화(堯和)의 고손자를 양자로 들인 것이다. 또 경희는 무자하여 생가 형인 규희(奎熙)의 아들인 석로(錫老)를 양자로 들이는데 경희에게 석로는 생가(生家)로 삼촌 사이이다. 양가(養家)로 계산하면 10촌이 넘는다.

석로는 종호(鍾浩)를 낳았지만 종호는 무자하여 조부 석로의 생가에서 조부의 동생인 영로(永老)의 아들 종옹(種滂)의 두 아들 가운데 장자 도순(道淳)을 양자로 들였다. 촌수를 치자면 조부의 생가 5촌 당질 양자를 한 것이다. 친가로 치면 촌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먼 사이이다. 그후 도순이 무자하여 생가 사촌인 교순(教淳)의 두 아들 낙빈(乃彬)과 낙빈(洛彬) 중에 둘째 아들인 낙빈을 입양했다. 생가로는 도순과 낙빈이 5촌 당숙질 사이이다.

동춘당의 가계를 보면서 가지는 질문은 요경이 아들 태현이 있는데 당질 조카인 복흙을 양자로 들였는가였다. 족보를 찾아보니 요경의 아들 태현이

17세에 요절하여 당질 조카 복흙을 양자로 들였는데 복흙이 아들 달연이 6살에 32세로 죽었다. 종가는 재당질 7촌인 부연을 양자로 들였던 것이다.

3) 광산 김씨 사계 종가

광산 김씨 사계 종가에는 30세, 33세, 34세 35세 4회에 걸쳐서 양자를 들였다. 30세 만준(萬竣)은 생부가 익희(益熙)이고 백부 익열(益烈) 앞으로 입양되었으니 3촌 양자이다.⁶⁾ 32세 인택(仁澤)은 무자하여 동생 천택(天澤)의 아들 상열(相烈)을 입양하니 3촌 숙질 양자이다.⁷⁾ 상열도 무자하여 상익(相翊)의 아들 기헌(箕憲)을 양자로 들였다. 상익은 반의 아들 익훈(益薰)의 후손으로 상열과 상익이 12촌 사이니 상열과 기헌의 촌수는 13촌이다.⁸⁾ 또한 기헌이 무자하여 기장(箕章)의 아들 재경(在敬)을 들였다. 기장은 반의 아들 익경(益景)의 후손으로 기헌과 기장이 14촌 사이이므로 기헌과 재경은 15촌 숙질간이다.⁹⁾ 38세 덕수(德洙)는 무자하여 반의 아들 익훈의 후손 중에 용숙(容璿)을 양자로 들였다. 덕수와 용숙은 21촌 숙질 사이이다.¹⁰⁾ 선중(銑中)은 반의 아들 가운데 익겸(益謙)의 아들 서포 만중(萬重)으로 이어지는 후손으로 용숙과는 23촌 숙질간이다.¹¹⁾

- 6) 槃 - 益烈 - 萬竣
- 益熙 - 萬均
- 萬增
- 萬竣_出
- 7) 鎭泰 - 仁澤 - 相說
- 天澤 - 相說_出
- 想璿
- 8) 槃 - 益烈 - 萬竣 - 鎭泰 - 仁澤 - 相說 - 箕憲
- 益勳 - 萬塚 - 鎭恒 - 慶澤 - 相翊 - 箕憲_出
- 9) 槃 - 益烈 - 萬竣 - 鎭泰 - 仁澤 - 相說 - 系箕憲 - 在敬
- 益景 - 萬堅 - 鎭岳 - 玄澤 - 相龜 - 箕章 - 在敬_出
- 10) 槃 - 益烈 - 萬竣 - 鎭泰 - 仁澤 - 相說 - 系箕憲 - 在敬 - 胄鉉 - 永壽 - 德洙 - 容璿
- 益勳 - 萬塚 - 鎭恒 - 慶澤 - 相翊 - 箕性 - 在三 - 胤鉉 - 永甲 - 得洙 - 容璿_出
- 11) 槃 - 益烈 - 萬竣 - 鎭泰 - 仁澤 - 相說 - 系箕憲 - 在敬 - 胄鉉 - 永壽 - 德洙 - 系容璿 - 銑中
益謙 - 萬重 - 鎭華 - 光澤 - 簡材 - 性秋 - 在範 - 百鉉 - 永秀 - 龜洙 - 容喆 - 銑中_出

광산 김씨 신독재 종가에는 33세와 40세 2회 양자를 들었다. 32세 구택(九澤)이 무자하여 동생 지택(趾澤)의 아들 상신(相愼)을 양자로 들었다. 39세 용문(容文)이 무자하여 동생 용빈(容斌)의 장자인 화중(和中)을 양자로 들었다. 신독재 종가에서 종손과 입양자의 촌수는 3촌 숙질간이다.

4) 창녕 성씨 우계 종가

우계 종가는 15세 회주(熙胄), 20세 광묵(光默), 24세 낙선(樂善), 25세 흥경(興慶), 26세 기범(耆範) 모두 5회에 걸쳐 양자를 들여서 봉사손을 이었다. 13세 문준(文濬)은 역(櫟)과 직(稷), 두 아들을 두었다. 역이 아들이 없어 동생 직의 아들 회주(熙胄)를 입양했다. 숙질 양자이다. 18세 덕운은 경주(擎柱), 을주(堉柱), 윤주(胤柱) 세 아들을 두었다. 19세 경주가 무자하여 동생 윤주의 아들 광묵(光默)을 양자로 들었다. 삼촌 양자이다. 22세 정호(鼎鎬)는 효영, 지영, 신영 세 아들을 두었는데 23세 효영(孝永)이 무자하여 신영(信永)의 아들 낙선(樂善)을 양자로 들었으니 삼촌 양자다. 25세 흥경은 생부가 낙인(樂仁)으로 당숙 앞으로 양자를 왔으니 5촌 사이에서 부자간이 된 것이다. 26세 기범은 생부가 영경(英慶)으로 백부 앞으로 들어왔으니 3촌 양자이다.¹²⁾ 이상에서 보듯 우계 종가에는 가깝게는 숙질간 멀게는 당숙간에 양자를 들었다.

5) 배천 조씨 증봉 종가

배천 조씨 조현 종가에는 무자(無子)로 인해 형제간에 봉사손을 바꾼 경우가 있다. 18세 현은 두 아들, 완기(完基)와 완도(完堵)를 두었으나 장자 완기가 아들이 없이 부친과 함께 왜적에게 죽임을 당해 종가에서는 차자 완도를 봉사손으로 정했다.

6) 울산 김씨 하서 종가

하서 김인후 종가에는 34세와 35세 두 번에 걸쳐 양자를 들었다. 33세 요신(堯臣)은 아들이 없어 동생 요민(堯民)의 아들을 양자로 들었다. 34세 면중(勉中)은 백부 앞으로 양자로 입적했다. 면중도 역시 무자하여 9촌간인 삼종질인 낙중(洛中)의 아들

의주(義柱)를 입양해 봉사손을 삼았다.¹³⁾

7) 하동 정씨 일두 종가

일두 정여창 종가에는 10세, 17세, 23세와 24세 4회에 걸쳐 양자를 들었다. 8세 여창(汝昌)은 두 아들, 희직과 희설을 두었다. 9세 희직(希稷)은 적손이 없고 서자 여산(如山)이 있었다. 희직은 죽음에 임박해 동생 희설(希設)에게 승계한다고 유언했다. 희설도 무자하여 사촌(四寸) 희참(希參)의 아들 언남(彦男)을 양자로 들었다.¹⁴⁾ 16세 윤현(胤獻)은 무자하여 사촌 찬(纘)의 아들 진화(鎭華)를 입양하였다. 윤현과 진화는 당숙질 사이로 5촌간이다. 22세 직현(直鉉)이 무자하여 삼종질인 순원(淳元)을 양자로 들었다.¹⁵⁾ 순원의 생부는 규현(圭鉉)이다. 23세 순원도 무자하여 삼종질(三從姪) 순규(淳圭)의 아들 근상(近相)을 양자로 들었다. 직현과 순원, 순원과 근상이 삼종숙질간이므로 9촌 사이이다.¹⁶⁾

12) 鼎鎬 - 孝永 - 樂善 - 興慶 - 耆範

- 趾永

- 信永 - 樂善出

- 樂薰

- 喆永 - 樂勉

- 樂中

- 樂均

- 樂仁 - 興慶出

- 英慶 - 耆範出

- 耆憲

13) 承祖 - 邦德 - 直休 - 章煥 - 堯臣 - 勉中 - 義柱

- 堯民 - 勉中出

- 邦烈 - 益休 - 宅煥 - 堯欽 - 洛中 - 義柱出

14) 六乙 - 汝昌 - 希稷

- 希嵩 - 彦男

- 汝裕

- 汝寬 - 希顏 - 元男

- 彦男出

15) 德濟 - 東老 - 煥輔 - 在箕 - 直鉉 - 淳元

- 東耆 - 煥球 - 在升 - 圭鉉 - 淳元出

- 淳亨

16) 東老 - 煥輔 - 在箕 - 直鉉 - 淳元 - 近相

- 煥禮 - 在修 - 麒鉉 - 淳圭 - 直相

- 近相出

8) 서흥 김씨 한훤당 종가

서흥 김씨 한훤당 종가에 26세까지를 본다면 단 한 번 양자를 들였다. 20세 계조(繼祖)는 무자하여 계원(繼遠)의 아들 정제를 입양했는데 계원이 정제의 백부이므로 계조와 정제는 3촌 숙질간이다.

9) 한양 조씨 정암 종가

한양 조씨 정암 종가는 26세까지 12세, 17세, 19세, 22세와 23세에 걸쳐 5회 양자를 들였다. 11세 용(容)은 무자하여 당제(堂弟) 희안(希顔)의 아들 순남(舜男)을 양자로 들였다.¹⁷⁾ 16세 원봉(遠朋)은 무자하여 백봉(百朋)의 차자 문보를 양자로 들였다. 숙질간 양자이다. 17세 문보(文普)는 세 아들 사은(思殷), 사충(思忠), 사흠(思欽)을 두었다. 문보의 장자 사은(思殷)이 부친의 이인좌난 연루 문제로 정암 조광조의 봉사손이 되기 어렵자 막내 삼촌 만보(萬普) 앞으로 출계되면서 무신년에 봉사손이 옮겨진 것(移宗)으로 만성대동보에 기록되어 있다.

18세 사은(思殷)이 무자하여 멀리 5세 조인벽(趙仁璧)의 막내 아들인 사(師)의 후손 정구(柵九)의 아들 중에서 기인(基仁)을 들였다. 촌수로 보면 양부 사은과 생부 정구와는 26촌 사이이다. 21세 승교(升教)가 무자하여 15세 한수(漢守)의 동생 위수(渭叟)의 차자 백봉(百朋)의 후손 중에 헌교(獻教)의 차자인 종순(鐘純)을 입양한다. 승교와 헌교는 14촌간이다. 14촌 종순도 무자하여 형인 종임(鍾林)의 차자 낙원(洛元)을 입양했다.

10) 진성 이씨 퇴계 종가

퇴계 종가는 23세까지 10세, 12세, 17세와 18세 4회 양자를 들였다. 첫 번은 9세 안도가 무자하여 동생 영도(詠道)의 차자 억(嶷)을 양자로 들여서 백부 앞으로 양자(3촌)로 왔다. 억의 아들 11세 명철(明哲)이 무자하여 동생 성철(誠哲)의 장자 고(昊)를 양자로 들였다. 백부 앞으로 3촌 양자를 온 셈이다. 셋째 경우는 16세 지순(志淳)이 무자하여 재당숙(7촌)인 휘영(暉寧)을 양자로 들였다. 17세 휘영도 무자하여 생가로 당숙(5촌)인 만희(晩憲)를 양자로 들였다.¹⁸⁾

퇴계 가계에는 양자가 가깝게는 숙질 멀게는 당질 사이로 가까운 혈친 중심의 입양이 실시되었다.

11) 여강 이씨 회재 종가

여강 이씨 회재 이언적의 법자(法子) 가계는 12세, 19세, 20세, 23세 4회에 걸쳐 양자를 들였다. 11세 언적이 적자가 없어 언적의 사촌 통(通)의 아들 응인(應仁)을 양자로 들였으니 5촌 당질 양자이다. 18세 헌조(憲祖)는 무자하여 8촌 헌중(憲曾)의 아들 정하를 입양했으니 9촌간이었다.¹⁹⁾ 19세 정하(鼎夏)도 아들 없이 22세에 죽어서 6촌 정상(鼎象)의 아들 원상(元祥)을 양자로 들였는데 정하와 원상은 7촌 사이이다.²⁰⁾ 22세 능현(能玄)은 무자하여 동생 능섭(能燮)의 아들 용구(容久)를 양자로 들였다. 백부 앞으로 양자 온 것이다.

여강 이씨 회재 이언적의 혈자(血子) 가계는 16

17) 元綱-學祖

-光祖 - 二子容 - 系舜男
-崇祖 - 三子希顔 - 候男
-舜男出

18) 守謙-世德-龜應-志淳-系彙寧-系晚喜

-世憲-龜夢-種純-彙周-晚浩
-顯淳-彙炳-系晚孫
-彙炯-晚孫出
-彙圭
-彙壽-晚臣
-彙寧出-晚喜出
-明淳-彙圭-晚浩出
-承淳-彙壽
-延純-彙寧
-在淳-彙承

19) 喞-墩-德種-誠中-憲祖-系鼎厦

-坵-德咸-益中-憲曾-鼎厦出
-系鼎洛
-憲閔-系鼎漢
-憲先
-憲俊-鼎洛出
-鼎漢出
-鼎濟
-鼎澹

20) 誠中-憲祖-系鼎厦-系元祥

-憲翼-鼎象-元祥出
-雲祥

세, 21세, 24세, 26세 4회에 걸쳐서 양자를 들었다. 15세 홍후(弘煦)는 아들이 없어 6촌 홍기(弘炆)의 아들 익규(益圭)를 양자로 들인다.²¹⁾ 7촌 숙질 양자이다. 20세 입(昱)은 무자하여 동생 옥(昱)의 아들 진연(眞淵)을 양자로 들였으니 3촌 숙질 양자이다. 23세 기원(紀元)이 무후하여 사촌 기대(紀大)의 아들 병유(秉裕)를 입양했다. 이는 5촌 당숙질 양자이다.²²⁾ 25세 윤덕(潤德)이 무자하여 동생 용덕(鎔德)의 아들 지락(志樂)을 입양했다. 그 촌수는 3촌 숙질간이다.

12) 반남 박씨 현석 종가

반남 박씨 현석 종가에는 모두 6회에 걸쳐 양자를 들었다. 초기에는 혈연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양자로 들였으나 후대로 갈수록 손이 귀해서인지 촌수가 먼 곳에서 양자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16대 태은(泰殷)은 동생 태여(泰與)의 아들 필신(弼莘)을 양자로 들었다. 삼촌 숙질 양자이다. 19세 순원(純源)이 무후하여 용원(龍源)의 아들 종기(種箕)를 입양하였다. 순원과 용원은 조부 필신의 손자 사이로 사촌간이니 순원과 종기는 5촌 당숙질 사이이다. 21세 대수(垚壽)는 무자하여 남수(南壽)의 아들 제형(齊衡)을 양자로 들었다. 이들은 세채의 아들 태은과 태회(泰悔)로부터 갈라진 사이로 대수는 세채로부터 6대이니 대수와 제형은 13촌 숙질 사이이다. 22세 제형(齊衡)은 육종숙질로 13촌 대수에게 양자로 들어왔으나 자신도 무자하여 팽수(彭壽)의 아들 제한(齊翰)의 아들 도양을 들었다. 제한이 팽수에게 양자로 들어갔고 제형도 대수에게 양자를 갖지만 생가로 치면 두 사람은 형제 사이이다. 따라서 도양이 제형에게 양자로 간 것은 삼촌 숙질 사이이다. 23세 도양(度陽)도 무자하여 기양(沂梁)의 아들 승준을 양자로 들었다. 25촌 사이이다. 24세 승준(勝駿)은 무자하여 동생 승봉(勝鳳)의 아들 용서(龍緒)를 양자로 들었다. 숙질간 3촌 양자이다. 현석 종가는 현석대 이후 자손이 귀해져서 필신이 양자로 들어온 것을 비롯해 모두 6회에 걸쳐 양자를 들었는데 가깝게는 3촌부터 멀게는 25촌까지에서 들었다.

이상에서 밝혀진 바를 요약하면 <표1, 2>와 같다. 혈연거리가 가까운 조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양자를 들이는 이유는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양자 대상의 개인적 특성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즉 지적으로 우수해 시험에 합격하여 진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거나 그 가계의 여러 형제가 출중해서 자손이 우수할 기대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김집 가계에도 시조나 증시조의 후손 중에서 양자를 선정하되 가깝게는 3촌 거리부터 29촌 거리까지 다양한 촌수에서 양자를 들었다. 이처럼 입양시 혈연거리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출중한 자손이 많이 생산된 파(派)에서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 등을 고려해서 양자를 결정지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이광규(1977), 최재석(1983)은 조선 중기에는 근거리 혈연에서 양자를 들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원거리 혈연친에서 양자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시간경과에 따른 원거리 입양가설은 이 자료로 보면 우암종가의 경우에는 들어맞지만 다른 종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암 종가에도 22세부터 27세까지 6대가 연속해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까운 혈연거리에 자손이 귀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일 수 있다. 정암 종가에도 19세에 양부와 생부가 26촌 거리에서 입양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인좌 난에 연루되어 자손이 귀해진 까닭이었다. 이처럼 원거리 입양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있는 듯하지 않지만, 원거리 입양이 빈번하다보면 혈연거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으며, 가문의 번영이 무엇보다도 종손의 인물됨에 의존한다는 능력 입양조건이 입양자 선정에 우선 순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1) 全仁-浚-宏-弘煦-^系益圭
-淳-容-弘炆-益圭^出

22) 眞淵-泰壽-紀元-^系秉裕
-恒壽-紀一
-紀大-秉裕^出

<표 1> 종가의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의 촌수

| 종 가 | 2촌 | 4촌 | 6촌 | 8촌 | 10촌 | 12촌 | 14촌 | 16촌 | 18촌 | 20촌이후 | 계 |
|-------------|--------|--------|--------|----|-----|-----|-----|-----|-----|-------|----|
| 울곡종가 | 2 | 1 | | | | | | | | | 3 |
| 우암종가 | 1 | 1 | | | | 1 | 1 | | 1 | 2 | 7 |
| 동춘당종가 | | 4 | 1 | 1 | 1 | | | | | | 7 |
| 사계종가 | 2 | | | | | 1 | 1 | | | 2 | 6 |
| 우계종가 | 4 | 1 | | | | | | | | | 5 |
| 중봉종가 | 1 | | | | | | | | | | 1 |
| 하서종가 | 1 | | | 1 | | | | | | | 2 |
| 일두종가 | | 2 | | 2 | | | | | | | 4 |
| 한훤당종가 | 1 | | | | | | | | | | 1 |
| 정암종가 | 1 | 1 | 1 | | | | 1 | | | 1 | 5 |
| 퇴계종가 | 2 | 1 | 1 | | | | | | | | 4 |
| 회재 법자 혈자 | 1 2 | 1 1 | 1 1 | 1 | | 4 | | | | | 4 |
| 현석종가 | 3 | 1 | | | | 1 | | | | 1 | 6 |
| 계 | 21 | 14 | 5 | 5 | 1 | 3 | 3 | | 1 | 6 | 59 |

<표 2> 세수별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간 촌수

| 종 가 | 1-5세 | 6-10세 | 11-15세 | 16-20세 | 21-25세 | 26-30세 | 31-35세 | 36-40세 | 계 | 비 고 |
|-------------|------|-------|--------|--------------|-----------------|----------|-------------|----------|---|-----------|
| 울곡종가 | | | | 2, 4 | | 2 | | | 3 | |
| 우암종가 | | | 4 | | 2, 12 14, 19 | 20 28 | | | 7 | |
| 동춘당종가 | | | | 4, 6 8 | 10, 4 10, 4 | | | | 7 | |
| 사계종가 | | | | | | 2 | 2, 12 14 | 20 23 | 6 | |
| 우계종가 | | | 2 | 2 | 2 | 4, 2 | | | 5 | |
| 중봉종가 | | | | 2 | | | | | 1 | 형망제급 |
| 하서종가 | | | | | | | 2, 8 | | 2 | |
| 일두종가 | | 4 | | 4 | 8, 8 | | | | 4 | |
| 한훤당종가 | | | | 2 | | | | | 1 | |
| 정암종가 | | | 6 | 26 | 12, 2 | | | | 4 | 18세 사은 제외 |
| 퇴계종가 | | 2 | 2 | 6, 4 | | | | | 4 | |
| 회재 법자 혈자 | | | 4 | 8, 6 6, 2 | 2 4, 2 | 4 | | | 4 | |
| 현석종가 | | | | 2, 4 | 12, 2 24, 2 | | | | 6 | |

V. 결 론

조선조의 승계(承繼)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고려 조부터 전해지던 몇 가지 승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를 고찰하려는 목적을 세웠다. 조선조에 와서 왕자의 난 이후 적통론이 강화되면서 문묘에 배향된 사대부가의 족보를 대상으로 종통(宗統)이 전해진 종손의 가계를 실증 자료로 선정했다. 배향 인물의 봉사(奉祀)는 조정에서도 관심을 두고 봉사손에게 능참봉 등의 음직을 주었기 때문에 조선의 적통에 의한 승계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전형적 자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족보자료를 통해서 승계원칙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조선 사대부가의 승계는 이성 승계 원리는 부재하고 동성승계 원리만 지켜져 왔다. 사대부가문의 승계는 유능한 사위나 외손으로 승계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선행연구(박병호, 1973)에서 나타난 조선 후기 이성 승계는 사대부가문이 아닌 일반 양반의 사가(私家)의 실례들로서, 종통을 강조한 유현 증가와는 그 상황이 달랐다. 종통의 원리와 실제 간의 괴리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었다. 종통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아도 되었던 일반 가계의 승계는 유현들의 종통관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문묘 배향 사대부가의 승계자는 혈손(血孫)²³⁾이 주를 이루고 때로 우암 송시열 가계의 종손처럼 동종친(同宗親)이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승계는 적손 우선 원칙이 실시되었으며, 보다 엄밀하게 적손 장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었다. 셋째 16세기까지 형제승계 원리가 존재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장자승계 원리가 주로 적용되었다. 난중에 장자가 무자인 채 사망한 증봉증가의 경우, 서자만 있고 적손이 없어서 차자에게 승계된 일두증가와 사계증가의 세 경우만이 예외로 형망제급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넷째 적손이 없이 서손만 있을 경우에는 조선 중기의 전기(16세기까지)에는 서손 승계의 원리가 존재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입양자 승계가 주로 적용되었다. 율곡, 신득재나 회재의 경우처럼 서손이 봉사손이 된 경우는 조선 중기의 전기이며 이들의 봉

사손 선정에 조정이 개입하여 혈손을 면천하여 승중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섯째 문묘 배향 증가에 입양은 승계를 목적으로 한 동종(同宗) 입양이었다. 입양자와 종손과의 친족거리(親族距離)는 3촌 숙질관계부터 29촌 숙질 사이까지 다양했다. 최재석(1983)이 주장한 시간경과에 따른 원거리 입양가설은 문묘 배향 가문의 족보로 보면 우암 증가의 족보자료에서 입증되었다. 우암증가에는 연속해 6대가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까운 혈연거리에 자손이 귀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일 수 있다. 원거리 입양은 문중 사람들에게 근거리 혈연 인식을 강화시키고 종손의 능력 입양 선정을 조장할 수 있다. 조선조 유현 가문의 승계는 혈연거리만이 아니라 입양자의 능력과 우수가계 등도 입양조건으로 고려되었다.

이 연구는 문묘에 배향된 가문의 종손 승계를 통해서 조선조 승계원칙의 적용을 살펴본 연구로서 이제까지 여러 선행연구들(박병호, 1961, 1973; 이광규, 1977; 최재석, 1983)에서 각각 논의되었던 승계원칙들을 족보(族譜)라는 실증자료를 통해서 고찰해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족보는 근 500여 년에 걸친 14개 가문의 족보로서 조선초기부터 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문의 승계를 살펴보는 기록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문묘 배향 인물 14인의 증가에는 조선조 내내 조정에서 봉사손에게 직위를 주었기 때문에 관의 승인하에 승계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승계 원리는 조선조 당시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묘에 배향된 조선의 명문 유현 증가를 통해 조선 유학의 근본인 적통론을 분석해서 몇 가지 원칙의 적용을 입증했다는 점에 특별히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성립된 조선 초부터 조

23) 혈손은 혈자의 후손을 말한다. 동종친은 한 시조의 후손을 의미한다. 양자를 들인 경우에 4촌 조카는 형제의 자녀이므로 혈친이나 혈손은 아니며, 8촌 조카 등은 조부가 다르기 때문에 원거리 혈친이다.

선말까지 500여 년이 넘는 가계의 통시적 분석이, 방법적으로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되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 1) 김두헌. (1969).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 2) 박병호. (1961). 이조말엽 승적(承嫡) 관습과 생전(生前) 양자. 법학, 3-1.
- 3) 박병호. (1973). 이성(異姓) 계후(繼後)의 실증적 연구. 법학, 14-1.
- 4) 유영주. (1975). 가족관계학. 서울: 수확사.
- 5) 이광규. (1977).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서울: 일지사.
- 6) 정금식. (1996). 조선초기 제사계승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7)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8)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 9) M. Peterson. (1974). *Adoption in Korean genealogies: Continuation of lineage*. *Korean Journal*, Vol. 14, No. 1.